

# -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-

## 답례품 공급업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3. 09. .  
제안자 : 평창군수

### 1. 제안이유

-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는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가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선정되어 비수익사업으로 대행하여 왔으나,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함.
- 「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24조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사무 민간 위탁에 대하여 평창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.

#### \* 용어의 정의

- 참여업체 : 생산제조업체
- 공급업체 : 유통 담당 업체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사무

#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『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』
  - 『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』
- 추진 필요성
  - 고향사랑기부제 최초 시행년도인 '23년의 답례품 공급업체

사무는 공개모집 공고를 통해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비수익으로 담당하였으나 민간위탁 사무로 전환하여 향후, 답례품 참여업체 교육 등 참여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, 기부자에게 원활한 답례품 공급체계를 확보하고자 함.

#### 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고향사랑e음 제품정보 등록 및 상세이미지 관리
- 답례품 품질 및 유통상태 모니터링 정상 배송 확인
- 품질 및 배송 민원 처리
- 답례품 수거·배송, 참여업체 교육
- 답례품 대금 및 택배비 청구 결제

라. 민간위탁기간 : 위수탁협약일 ~ '26.12.31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공고

#### 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소요예산 : 44백만원
  - 인 건 비 : 3,333천원 \* 1명 \* 12개월 ≒ 40,000천원
  - 출장여비 : 100천원 \* 1명 \* 12개월 = 1,200천원
  - 일용인부 : 100천원 \* 2명 \* 14일 = 2,800천원

#### 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다른 사무 방식으로 수행 가능성
  - 직영 사무 방식의 경우 참여업체 교육·관리 및 품질배송 민원 처리 등으로 지속 확대에 한계 있음.
-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, 경제적 효율성
  - 농특산물 답례품의 품질, 배송 등 유통 전문 공급업체에서 다수의 참여업체 관리의 경우 안정성 및 경제적 효율성 확보됨
-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 - 농산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에 위탁하여 안정적인

경험과 노하우 등을 활용할 수 있음.

○ 성과 측정의 용이성

- 답례품 제품정보, 배송 상황, 제품 공급 상황 등 수시 모니터링으로 성과 측정 용이함.

○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
- 답례품의 신속한 공급 여부 수시 모니터링, 신규 참여업체 교육, 배송비의 신속한 청구 결제, 고향사랑e음 제품정보 수시 업데이트 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높음.

○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

- 공급업체와 참여업체가 같은 경우, 답례품의 신속·정확한 배송 체계를 관리, 품질 및 배송오류에 대한 민원처리 등에 과도한 행정력이 소요되고, 전자상거래 경험이 없는 참여업체 교육에 한계 있을 수 있음.

차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○ 운영현황

-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공급업체 : (재)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

○ 관련자료

-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 : '22.12.8~12.22
-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심사선정 : '23.12.23  
(평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 개최)
- '23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 운영 계약(협약) : '23.1.1~12.31

○ 관계법령
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
-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4조

## 관련자료

### □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공고

(세정과-3101, 2022. 12. 7.)

평창군 공고 제2022-1808호

###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

고향사랑기부제가 '23년 1월 전국 동시 시행됨에 따라 평창군에 기부를 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22년 12월 8일

평창군수

#### 1. 공모개요

- 공모명 :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모
- 공고기간 : '22. 12. 8(목) ~ 12. 21(수)(14일간)
- 공모내용 :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
- 선정규모 : 1개 업체
- 신청자격
  - 평창군에 기부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갖추고 평창군에 주소를 둔 법인
- 제외대상
  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
  -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·폐업 중인 업체
  -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

□ '23년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심사선정

(세정과-3897, 2022. 12. 26.)

등록번호	세정과-3897	주무관	세정팀장	세정과장	행정지원국 국장 직무대리	
등록일자	2022. 12. 26.	김경희	박서우	김남호	전필 2022. 12. 26.	
결재일자	2022. 12. 26.	협 조				
공개구분	비공개(5)					

- 고향사랑기부제 -

**답례품 공급업체 심사 결과 보고**



평 창 군  
(세 정 과)

# □ 23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 운영 계약(협약)

(세정과-520, 2023. 1. 9.)

##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평창군 답례품 공급·운영 계약(협약)서

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(이하 '군'이라 한다)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(이하 '공급업체'라 한다) 간 다음과 같이 공급 계약(협약)을 체결한다.

### 제1절 계약의 목적 및 체결

**제1조(목적)** ① 본 계약은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'군'과 '공급업체' 간에 신의·성실을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② 본 계약은 '답례품' 공급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계약이며,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의사(주문)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(이하 '고향사랑e음'이라 한다)을 통해 '공급업체'에 도달한 때에 확정되는 것으로 본다.

**제2조(계약기간)** 본 계약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① '답례품'이라 함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「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른 군내 지역특산품, 물품 등으로 '군'이 '평창군 답례품선정위원회'(이하 '답례품선정위원회'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것을 말한다.

② '기부자'라 함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을 평창군에 기부한 자를 말한다.

**제4조(계약 당사자의 역할)** 본 계약의 당사자인 '군'과 '공급업체'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
1. '군' : 계약이행 관리·감독, '답례품' 공급실적 확인, '답례품' 품질·위생관리 수준 모니터링, '답례품' 공급대금 지급, '답례품' 배송비용 지원.
2. '공급업체' : '답례품'의 유통·포장·공급 등 계약이행, 답례품 불량변질 등 하자에 대한 책임, 제품에 대한 민원 처리, 기타 답례품 공급운영을 위한 '군'의 관리감독에 대한 준수, 기타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.

**제5조('공급업체' 업무의 범위)** '군'의 관리·감독하에 '공급업체'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조(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제24조(사무위탁) ① 군수는 답례품 정보 '고향사랑e음' 등록, 주문·결제·배송·관리, 생산자 교육, 답례품 품질 및 배송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는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게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를 준용한다.